

이승준 연구위원, 이승주 연구원

요약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이때 공동행위의 독점규제법 위반 등 법률 리스크가 높아질 우려가 있음. 영국 경쟁당국은 이러한 법률 리스크의 완화를 위해 기업 간 환경 지속가능성 협정의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는 요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독점규제에 환경 지속가능성 관련 요소를 공동행위의 적용제외 사유에 포함시키거나, 보험업법의 상호협정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기후위기에 맞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때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법률 리스크가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이 낮은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려는 산업 전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
 - 탄소배출을 줄인 생산방식이나 공급망은 추가되는 탄소저감 비용으로 인하여 시장경쟁에서 불리¹⁾할 수 있어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모두가 선택을 망설이게 되며, 이는 산업 전체의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옴
 - 또한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석탄 등 화석연료에 기반한 화력 발전소에 대한 보험인수를 공동으로 중단하는 협정이 필요할 수 있음
 - 하지만 탄소배출을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공동행위가 현행 독점규제에서 경쟁기업 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지는 명확하지 않음²⁾
 - 우리나라의 2020년 개정 공정거래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기업이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공동의 거래거절'로 규정하며 또한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집단적 차별'로 규정함
- 최근 미국 23개 주 검찰총장들은 탄소중립보험연합(NZIA)³⁾ 소속 보험회사들에 보낸 서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보험회사들의 보험인수 거절 행위가 미국 연방 반독점법 및 개별 주의 보험법을 위반할 수도 있음을 경고함
 - UN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글로벌 보험산업 연합체인 탄소중립보험연합(NZIA)은 최근 보험산업의 보험인수 관련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수립하는 방법론⁴⁾을 발표하고 소속 보험회사에 감축목표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1) First mover disadvantage

2)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3) Net Zero Insurance Alliance

4) NZIA Target Setting Protocol(2023)

- 경쟁 보험회사들이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에 대한 보험인수를 공동으로 거절한다면 이는 미국 연방 반독점법에서 금지하는 거래거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들이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함
 - 반독점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NZIA는 개별 보험회사의 독립적인 감축목표 설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주 검찰 총장 서한은 '준수 또는 설명'이나 '정기적 보고' 등의 내용을 근거로 이를 공동행위로 간주하고 있음
- 또한 보험회사가 위험 요인이 아닌 탄소배출 등 환경적 요인을 근거로 인수를 거절하거나 차별적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주 보험법의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음
- 가스와 석유산업의 비중이 높은 주를 중심으로 반 ESG의 경제적 유인이 높으며 보험회사의 이들 산업에 대한 인수 거절로 인하여 에너지 가격을 높이고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으로 보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 간 공동행위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의 해결을 위해 영국 경쟁당국⁵⁾은 환경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기업 간 공동행위에 대하여 경쟁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요건에 관한 지침을 마련 중임⁶⁾

- 영국 경쟁법은 경쟁 제한 효과로 인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더라도 공동행위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편익을 높이는데 불가결하며 이 편익이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충분한 경쟁이 유지되는 경우, 경쟁법의 적용을 면제함
- ① 기업들의 공동행위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되고 친환경 제품의 품질과 다양성이 개선되며 생산 및 유통 공정의 탈탄소화 등 저탄소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이런 경제적 편익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검증이 가능한 경우
 - 지속가능성 관련 편익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므로 이러한 미래의 편익까지 고려하여 공동행위의 경제적 편익을 반영해야 함
- ② 특정 사안에 대한 공동행위 없이는 기업들이 지속가능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 지속가능 협정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 예를 들어, 해당 산업에서 공동행위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환경친화적 중간재를 사용한 생산에 필수적이라서 공동행위 없이는 모든 기업이 높은 비용 때문에 환경친화적 중간재를 사용한 생산을 못 하게 되는 경우⁷⁾
- ③ 기업들의 지속가능 공동행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직·간접적인 혜택이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 공동행위를 통하여 친환경 상품의 품질 및 다양성이 높아지고 가격은 낮아져 이를 통한 직접적인 편익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며 보다 넓은 관점에서는 환경 지속가능성이 향상되며 얻게되는 간접적 혜택도 있음을 증명
- ④ 기업들의 지속가능 공동행위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에서 가격과 품질 등을 통한 충분한 경쟁이 유지되는 경우
 - 특히 공동행위가 관련 시장 전체가 아닌 시장 일부에만 해당되는 경우, 전체 시장에는 충분한 경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 독점규제에서도 공동의 거래거절이나 집단적 차별 관련 조항의 적용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에 지속가능성 관련 사유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5) 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

6) CMA(2023), "Draft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the Chapter 1 prohibition in the Competition Act 1998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greements"

7) First mover disadvantage가 존재하는 경우임

- 독점규제에서 공동행위의 적용을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에 환경 관련 지속가능성을 포함시킬 경우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공동행위에 대한 법률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보험산업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공동행위에 대한 법률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제외 이외에도 보험업법상 상호협정을 활용할 수도 있음

- 미국 내 반 ESG 진영에서 보험산업의 탄소중립 목표설정에 대한 반독점법 및 보험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화석 연료를 비롯한 고탄소 배출 산업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역설적으로 보험산업의 역할이 탄소중립에 중요함을 시사함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친환경 지속가능 공동행위에 대한 법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독점규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외에도 보험업법 제125조의 상호협정을 활용할 수 있음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와 함께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상호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업법의 상호협정을 활용하는 경우, 미국 검찰총장 서한에서 제기된 환경적 요인에 의한 보험료율의 차별과 관련된 논란도 비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